

“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국토정보 전문기관”

기강감사

감사 결과 처분요구서

취약시기(대북 긴장 상황 발생 등) 기강감사

2017. 2.

UX 감 사 실
한국국토정보공사

I. 감사실시 개요

1. 감사배경 및 목적

- 대북 긴장 상황 발생 및 관리자 워크숍 개최에 따라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복무점검 및 행동강령 준수 상태를 점검
- 화재사고 예방활동, 유사 시 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행정조치 등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

2. 감사대상 기관

- 대상기관: ☆○◇□지역본부, ▽△지역본부 등 9개 기관

3. 감사 중점사항

이번 감사는 복무점검 보안상태, 시설물 안전 등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, 비상시 대응체계 점검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였음

□ 근태 및 임직원행동강령 준수

- 출·퇴근시간 준수 및 출장명령부, 외출부, 특근명령부 등의 기록관리의 적정성
-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, 업무태만 등 복무위반 행위
- 공용재산의 사적이용 행위 등 「임직원행동강령」 위반 행위

□ 사옥 및 보안관리 점검

- 출입문 잠금, 캐비닛 및 물품창고 등 장치 점검
- 사원증(출입증), 보조기억매체 등 중요 정보자료의 보관 상태 점검
- 중요 정책문서 등 방치 점검

□ 화재사고 예방활동 점검

- 미사용 전원제거 및 비인가 전열기 사용 금지 점검
- 보일러실 일일 안전점검
- 소화기 비치의 적정성, 작동상태 점검

□ 유사시 대비태세 유지 점검

- 비상연락체계 유지(2. 13. 정기인사발령에 따른 비상연락망 최신화) 점검

4. 감사기간 및 인원

2017. 2. 21.부터 2. 22.까지 2일간 4명의 감사인력(연 인원 8명)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. 이후 감사실의 감사심의조정회의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.

II.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

1. 행정상·재정상·신분상 처분요구사항 일람표(단위: 건, 명, 원)

처분지시 일련번호	감사대상기관 (관계기관부서)	건 명	처분요구			조치기한	감사자
			행정상조치	재정상조치	신분상조치		
1	▽△지역본부 ★★★★처	비상대비업무를 위한 비상연락망 보완 소홀	통보			1개월	김○○ 김★★
2	▽△지역본부 △□◁☆지사	화재사고 예방활동, 에너지 절약 및 사육관리 소홀			문책 (기관장 경고)	20일	김○○ 김★★

※ 처분요구: 2건<통보 1건, 문책요구(기관장 경고) 1건>

1-1.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

제목	처분내역				
	조치양정	소속	직급	성명	관련지적사항
화재사고 예방활동, 에너지 절약 및 사육관리 소홀	문책 (기관장 경고)	△□◁☆지사	국토정보직 3급	최○△	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개인 전열기를 책상 아래 보관하였고, 화재발생 시 즉시 사용하여야 하는 소화기를 찾을 수 없는 곳에 비치하는 등 화재사고 예방 및 에너지 절약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, 물품보관창고에 잠금장치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 물품도난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는 등 사육관리 전반을 소홀히 하였다.

III. 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□ 불 임 : 감사결과 처분요구서(본사 포함) 2부. 끝.

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

통 보

제 목 비상대비업무를 위한 비상연락망 보완 소홀

관 계 기 관 ▽△지역본부 ◎◇□☆처

내 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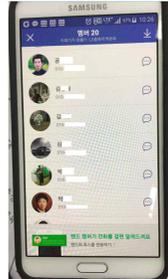
한국국토정보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에서는 비상사태 발생 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.

「당직근무 및 비상근무규칙」 제4장에 따르면 “전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고, 연락체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야 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다.

그리고 “정기인사관련 비상대비업무 후속조치 알림(경영지원실-1114: 2017. 2. 16.)”에서 “정기인사에 따라 기관·부서별 비상연락망을 즉시 보완”하도록 지시하였다.

따라서 모든 기관은 2017년도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비상연락망과 비상연락체계 등을 재정비하여 비상대비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.

[표] 비상연락망 및 비상연락체계 운영 현황

인사이동으로 진출된 최▽△차장, 박○◇차장 등이 포함된 “비상연락망” 게시 중	인사이동으로 진출된 김◎■ 등이 포함된 “비상연락체계(SNS 등)” 운영 중
	

그런데도 관내 복무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인 ▽△지역본부 ○◇□☆처에서는 [표] 현황과 같이 2017년도 정기인사이동 후 비상연락망, 비상연락체계(SNS 등)를 현행화하지 않는 등 공사 비상대비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조치할 사항 ▽△지역본부장은 2017년도 정기인사이동에 따른 비상연락망, 비상연락체계 등을 즉시 보완하고,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「당직 및 비상근무규칙」 및 “LX비상연락체계 정비(안) 알림(경영지원실-4763: 2016. 6. 17.)”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

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

문책요구(기관장 경고)

제 목 화재사고 예방활동, 에너지 절약 및 사옥관리 소홀

관 계 기 관 ▽△지역본부 ○◎▣●지사

문 책 대 상 자 ▽△지역본부 ○◎▣●지사장

문 책 종 류 기관장 경고

내 용

한국국토정보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는 화재사고 예방과 에너지 절약 및 사옥관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.

「부동산관리규칙」 제22조에 따르면 “화재예방 및 소방설비 상태 등 점검을 통하여 부동산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다.

그리고 “공직기강 및 복무관리 강화(경영지원실-1125: 2017. 2. 17.)”에서 “화재사고 예방활동 강화로 1) 미사용 전원제거 및 비인가 전열기 사용금지 2) 보일러실 일일 안전점검 철저 3) 소화기 작동상태 점검 및 보완” 등을 지시하였다.

따라서 지역본부, 지사에서는 사옥 및 보안관리 철저, 화재사고 예방활동 강화 등을 위하여 관련 규정과 경영지원실의 지시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.

[표1] 화재사고 예방 등 점검 결과

소속	직급	성명	위반 현황
▽△지역본부 ○◎■●지사	국토정보직 3급	최☆○	- 소화기 비치 장소 부적정 및 점검 소홀 - 경계점표지 보관 창고 잠금장치 미설치
	국토정보직 5급	장◎◇	- 비인가 개인 전열기 보관(책상 아래)
	국토정보직 4급	서▽◇	- 멀티탭 전원 미차단
	국토정보직 3급	박○◇(휴가 중)	
	국토정보직 5급	양♠♡	
	국토정보직 7급	고■●	

[표2] 점검결과 사진대장

미인가 개인전열기 보관	소화기 비치 장소 부적정	물품보관창고 잠금장치 설치 미흡
		 * 잠금장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문 열림

그런데도 ▽△지역본부 ○◎■●지사는 [표1] 현황과 같이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개인 전열기를 책상 아래 보관하였고, 화재발생 시 즉시 사용하여야 하는 소화기를 찾을 수 없는 곳에 비치¹⁾하는 등 화재사고 예방 및 에너지 절약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

물품보관창고에 잠금장치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 물품 도난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는 등 사옥관리 전반을 소홀히 하였다.

1) 「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(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21호(2015. 3. 24.) 제4조 (설치기준)에 따르면 업무시설의 경우 100㎡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, 소화기구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가 있는 곳에는 “소화기”라고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.

조치할 사항 사장(○□처장)은 「직원경고등 처분에 관한 지침」 제5조(처분사유)에 따라 화재사고 예방활동, 에너지 절약 업무 및 사옥관리 전반을 소홀히 한 ▽△지역본부 ○◎■●지사를 문책(기관장 경고) 처분하시기 바랍니다.